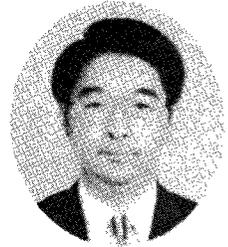


日本에서 原子力施設 周邊地域對策



大久保 秀幸

〈電氣事業連合會 立地環境部 副部長〉

I. 序 論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문제는 더욱더 복잡화되어서 안전문제, 환경문제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하는 지역 전체와 깊게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로 변화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의 입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더욱더 그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원입지의 원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환경면, 안전성 등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공개공청회, 입지함에 있어서의 적절한 보상, 또한 전원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비롯한 지역진흥책 등 지역 및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각종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

다음에 각종 시책을 환경면, 안전성 등에 관한 이해 촉진, 보상 및 지역진흥 등 세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環境面・安全性 등에 관한 理解 促進

1. 環境影響評價

환경영향평가란 「개발행위가 인간, 물, 토양,

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 그 방지책에 대하여 대체안의 비교검토를 포함해서 사전에 예측과 평가를 시행한다」라는 것이다.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평가를 시행했으며, 전원개발심의회 심의, 전기사업법 8조 허가의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심사도 시행하여 왔으나, 1970년 이후 환경보전의 여론이 높아짐을 반영하여 환경심사체제가 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사업자는 입지지점 및 그 주변의 인간, 수질, 기상, 바다생물 등에 관하여 통상 1년간의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발전소의 건설공사중 및 운전개시후의 영향에 대하여 예측·평가를 행한다.

② 이 평가를 환경영향조사서에 종합하여 소관 관청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송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상발전소가 소재하는 지방관서에서 1개월간 공람시킨다.

또한 이 기간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반대파의 방해 등 전기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원활한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명자료의 배포 등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③ 지역주민은 환경보전의 견지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으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관계관청, 자치단체는 환경심사를 시행한다.

2. 公開公聽會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신청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에 관한 설명이 전력회사에 의하여 거듭 시행되는데, 이중 공식적인 것으로 제1차 및 제2차 공개공청회가 있다.

제1차 공청회는 전원조정심의회 전에 통산성 주최로 시행되고, 제2차 공청회는 통산성에 의한 안전심사 종료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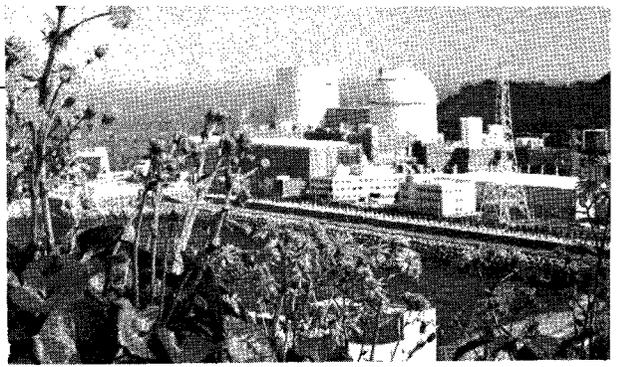
이는 화력발전소의 입지에는 없는 절차로서 그 목적은 원자력개발기술은 첨단적 요소를 포함한 고도의 거대하면서도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넓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등 입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역의 더한층 이해와 협력을 얻어서 입지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Ⅲ. 補 償

전원입지의 여러 과정에서 광대한 용지 확보에 수반하는 다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일, 해면의 매립 및 냉각수의 취배수 등에 대하여 어업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큰 절차이다.

특히, 근래에는 온배수의 어업자원에 대한 영향 및 피해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섭기간의 장기화, 보상금액의 고액화 등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바다나 토지에 대한 애착 등 심정면의 문제, 어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 발전소입지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져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전기사업자는 끈기있는 교섭을 하여 왔고, 때로는 현지사 등 제3자의 중재를 얻어서 해결을 해 왔다.

또 보상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확보하여 어업진흥기금사업, 온배수의 유효이용 등 어업자원의 재생 등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전원입지와 어업 등의 공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Ⅳ. 地域振興

1. 電源三法交付金の 交付

전원지역은 일반적으로 과소지이며, 전원입지를 계기로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전원3법교부금이 있다.

이는 1970년대의 전원입지안에 대처코자 1974년에 제정된 제도로서, 고정재산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전원입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큰 매력이 되었었다.

전원3법제도의 주요 취지는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의 공공용 시설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발전용 시설의 설치 원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발전용 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제1조)라는 것으로 기본적인 구성은 전력회사에서 전력판매량 1,000KWH당 445엔의 전원개발촉진세를 징수하여 이것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입지지역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각 교부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의 공공용 시설(도로,

항만, 어항, 도시공원, 수도 등)의 정비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지 및 입지주변지역에 교부
된다.

교부기간은 「착공에서 운전개시후 5년후까
지」이며, 110萬KW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교부하
는 표준적 교부금액은 약 69억엔이다.

1988년부터 핵연료주기시설(재처리시설)이
교부대상으로 추가되었다.

b.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교부금

원자력발전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 및 주변지
역에는 「원자력입지급부금교부사업」(주민, 기업
등에 급부금의 교부) 또는 「기업의 도입, 산업
근대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에 교부된
다.

교부금액은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용량에 따라
서 주민에 대하여 300~900엔/호·월, 기업에
대하여 75~225엔/계약KW·월로 되어 있다.

c. 전력이출 등 교부금

발전용 시설 주변지역의 기업 도입, 산업
근대화사업 및 기업입지자금 대부사업에 충당하
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으로서, 교부금액은 해당
현의 이출전력량에 상응하여 0.5~6억엔(기업입
지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50% 증
가)으로 되어 있다.

특히, 1981년에 제정된 「원자력발전 등 시설
주변지역교부금」은 전력요금의 할인으로 개인
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환원 및 기업 유치로
도모하는 등 획기적인 것이며, 동시에 제정된
「전력이출교부금」은 기업 유치, 산업의 근대화
등 지역진흥에 공헌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地域振興事業

전원입지지역에는 상당한 이익이 제공되고
있으나, 발전소 건설 후에는 급속하게 효과가
없어져 전원입지는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전원지역의 장기
자율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1985년부터
국가에 의한 「전원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이
전국 각지의 전원입지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또 전기사업자로서도 발전소의 입지는 지역주
민의 이해와 협력에 의하여 비로서 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고용(건설, 정기점검의 고용),
지역산업의 육성, 기업유치 등 종전부터 지역과
의 공존공영에 가능한 협력하고 있다.

V. 結 論

일본의 전력수요는 최근 대폭적인 신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정도는 전력의
안정공급이 확보 가능하다고 예상되나, 그 후에
는 현재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 전력수급이
급격하게 꺾박받을 우려가 크다.

이는 주로 신규 예정지점에서 지역의 합의를
얻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최근의 반원전의 여론을
반영한 원전반대파 운동의 활발화를 들 수 있
다.

원활한 입지추진을 도모하려면 전원입지의
필요성, 안전성 등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얻음
은 물론이고, 이들 반대운동에 대하여는 도시를
포함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진정한 PA(Public
Acceptance)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한층
중요해 졌다.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기존 전원지역에서
전원3법교부금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진
흥이 기대에 못미치는 지역도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이 전원입지를 지역활성화
의 단순한 기폭제로 끝내지 말고 기업의 유치,
지역산업의 육성 등 항구적인 지역진흥에 연관
되는 시책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강화·충
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